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76호, 2023. 12. 29.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17. ~ 1.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3항 중 “2024년 2월 21일”을 “2026년 2월 21일”로 한다.

별표 31 제10호 중 “2024년 2월 21일”을 “2026년 2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한시정원) ① ~ ⑫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4</u>	⑬ ----- ----- ----- ----- <u>2026</u>
<u>년 2월 21일까지</u>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물학원에 둔다.	<u>년 2월 21일</u> ----- ----- -----.
⑭ ~ ⑳ (생략)	⑭ ~ ⑳ (현행과 같음)